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2. 4.

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월 18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1. 28)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고광득)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입법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128조”를 제“137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 개정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5조 제2호의 “제44조”를 “제56조”로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표준안에 맞추어 별표 수수료 중 8종의 항목 및 요율을 개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체 입법에 따라 별표 수수료 중 2종 삭제, 1종 문구정비, 2종 요율 개정, 12종은 항목을 신설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징수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법령의 폐지, 제정, 개정에 맞게 사무명 및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수수료가 일시에 많이 인상되어 대민업무 처리에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2008. 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입법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제128조”를 “제137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 개정함.
- 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호의 “제44조”를 “제56조”로 개정함.
- 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안에 맞추어 별표 수수료중 8종의 항목 및 요율을 개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체입법에 따라 별표 수수료중 2종 삭제, 1종 문구정비, 2종 요율 개정, 12종 항목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1) 입법예고(2007.12.24 ~ 2008.1.13) 결과 “의견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8조”를 “제137조”로 “제130조”를 “제139조”로 개정함.

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44조”를 “제56조”로 개정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6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1개년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개년	800	
	1호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건	500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1,000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500	
2) 무적증명	1건	500	
3)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1매	3,500	
마.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필지	500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	
나) 칼라발급	1필지	1,500	
바. 회계관계 증명			
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1건	1,000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4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5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	1건	5,000	
나) 연장신청	1건	3,000	
2)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1건	30,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1건	2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3,000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8)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변경허가	1건	4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변경신고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	
6)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2) 유원시설업 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나)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5) 위생처리업	1건	20,000	
6) 위생처리업 변경	1건	10,000	
7) 세척제 제조업	1건	20,000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건	20,000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1) 장난감 제조업	1건	20,000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3)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	
3) 일반게임장업 등록	1건	30,000	
4)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5,000	
5)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6)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허가업+등록업+신고업중 2이상 복합)	1건	·해 당수수료+5천 원(2개 이상 복 합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의 수 수수료+5천원)	
8)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1건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수수료의 1/2로 함	
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건	10,000	
11)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2)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건	10,000	
13)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1건	20,000	
14)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건	10,000	
15)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1건	20,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1건	10,000	
17)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1건	20,000	
18)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변경	1건	10,000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2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1건	10,000	
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	1건	10,000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 - 1건이 1개 이상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기준) 1회: 200원 · 1MB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2)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개설 허가	1건	50,000	요양병원 개설 2)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변경	1건	40,000
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1건	30,000	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	1건	40,000
4)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1건	20,000	4)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변경	1건	20,000
5)~8) (생략)			5)~8)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생략)		
마.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			마.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업]			(삭제)		
1)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청소년게임장업 신고)	1건	5,000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500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
[등록업]			(삭제)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5,000	3) 일반게임장업 허가	1건	3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4) 일반게임장업 허가 변경	1건	15,000
5)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	5)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6)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6)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10,000
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허가업+등록업+신고업중 2이상 복합)	1건	해당수수료+5천원(2개이상복합하는경우그중큰금액의수수료+5천원)
8)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건	· 복합유통제공업등록수수료의 1/2로 함.
9)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가) (등록업+등록업) 나) (등록업+신고업)	1건	· 해당등록수수료 + 5천원, · 2개 이상의 등록업은	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p>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p> <p>(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신설) (신설) (신설)</p> <p>(신설)</p> <p>(신설) (신설)</p>	<p>1건</p>	<p>복합하 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의 수수료 로 함.</p> <p>· 복합유 통제공 업 등록 수수료 의 1/2 로 함.</p>	<p>1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 급업 변경</p> <p>11) 비디오물 제작및배급업 신고 12) 비디오물 제작및배급업 변경 13)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14)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변경 15)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1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변경 17)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업 등록 18)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업 등록 변경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2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p>	<p>1건</p> <p>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p>	<p>10,000</p> <p>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p>
<p>마.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2) (생략)</p>	<p>1건</p>	<p>20,000</p>	<p>마.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2) (현행과 같음)</p>	<p>1건</p>	<p>30,000</p>